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1,048,800	28,231,464
일반회계	881,339,376	26,440,181
특별회계	59,709,424	1,791,283
기타특별회계	59,709,424	1,791,28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3,240	7,8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9,103,968	573,119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210,000	126,300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2,606,100	978,183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79,500	2,385
수질개선 특별회계	59,062	1,77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436,400	13,09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33,654	28,010
주차장 특별회계	2,017,500	60,52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47,000천원(일반 6,000,000, 재해·재난목적 5,647,000)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